

2024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예산총칙]]

제 1조 2024년도 옥천군장애인복지관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404,838천원으로 한다.

합 계		4,404,838		
장애인 복지관	복지관	2,914,298		
	주간보호	282,183		
	장애인활동지원	1,208,357		

제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조 복지관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상 예산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1) 관간 전용 또는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 2) 목간의 전용은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 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보조금, 지정후원금, 찬조보조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5조 예비비의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시하여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의 받아야 한다.

제 6조 복지관의 예산의 의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2024년도 옥천군장애인복지관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 옥천군장애인복지관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기관별	계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자체부담금		계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잡지출		예비비및기타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총 계		4,404,838	2,865,404	65.1	67,510	1.5	1,471,924	33.4	4,404,838	2,941,957	66.8	62,800	1.4	1,299,124	29.5	3,120	0.1	97,837	2.2
장애인복지관	복지관	2,914,298	2,636,414	90.5	67,510	2.3	210,374	7.2	2,914,298	1,627,103	55.8	23,600	0.8	1,190,084	40.8	2,798	0.1	70,713	2.4
	주간보호	282,183	228,990	81.1	0	0.0	53,193	18.9	282,183	221,590	78.5	7,200	2.6	26,040	9.2	229	0.1	27,124	9.6
	활동지원사업	1,208,357	0	0.0	0	0.0	1,208,357	100.0	1,208,357	1,093,264	90.5	32,000	2.6	83,000	6.9	93	0.0	0	0.0

2024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장애인복지관



2024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장애인복지관

세입 예산액 2,914,298천원

세출 예산액 2,914,298천원

세입. 세출 차인잔액 없음



목천군장애인복지관

[[예산총칙]]

제 1조 2024년도 장애인복지관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914,298천원으로 한다.

(단위 : 천원)

세입	계	2,914,298	세출	계	2,914,298
	사업수입	62,600		사무비	1,627,103
	보조금수입	2,636,414		재산조성비	23,600
	후원금수입	67,510		사업비	1,190,084
	전입금	5,000		잡지출	2,798
	이월금	140,184		예비비및기타	70,713
	잡수입	2,590			

제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조 복지관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상 예산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1) 관간 전용 또는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 2) 목간의 전용은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 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보조금, 지정후원금, 찬조보조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5조 예비비의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시하여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의 받아야 한다.

제 6조 복지관의 예산의 의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2024년도 옥천군장애인복지관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1차예산 (A)	2차예산 (B)	증 감(B-A)		관 항 목	1차예산 (A)	2차예산 (B)	증 감(B-A)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2,886,608	2,914,298	27,690	1.0	합 계	2,886,608	2,914,298	27,690	1.0
01 사업수입	55,000	62,600	7,600	13.8	01 사무비	1,649,203	1,627,103	△22,100	△1.3
02 보조금수입	2,636,414	2,636,414	0	0.0	02 재산조성비	18,100	23,600	5,500	30.4
03 후원금수입	48,010	67,510	19,500	40.6	03 사업비	1,146,384	1,190,084	43,700	3.8
04 전입금	5,000	5,000	0	0.0	04 잡지출	2,609	2,798	189	7.2
05 이월금	140,184	140,184	0	0.0	05 예비비및기타	70,312	70,713	401	0.6
06 잡수입	2,000	2,590	590	29.5					

2024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024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세입 예산액 282,183천원

세출 예산액 282,183천원

세입. 세출 차인잔액 없음



목천군장애인복지관

[[예산총칙]]

제 1조 2024년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82,183천원으로 한다.

(단위 : 천원)

세입	계	282,183	세출	계	282,183
	사업수입	14,400		사무비	221,590
	보조금수입	228,990		재산조성비	7,200
	이월금	38,703		사업비	26,040
	잡수입	90		잡지출	229
				예비비및기타	27,124

제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조 복지관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상 예산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1) 관간 전용 또는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 2) 목간의 전용은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 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보조금, 지정후원금, 찬조보조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5조 예비비의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시하여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의 받아야 한다.

제 6조 복지관의 예산의 의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2024년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1차예산 (A)	2차예산 (B)	증 감(B-A)		관 항 목	1차예산 (A)	2차예산 (B)	증 감(B-A)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282,133	282,183	50	0.0	합 계	282,133	282,183	50	0.0
01 사업수입	14,400	14,400	0	0.0	01 사무비	220,590	221,590	1,000	0.5
02 보조금수입	228,990	228,990	0	0.0	02 재산조성비	8,200	7,200	△1,000	△12.2
03 이 월 금	38,703	38,703	0	0.0	03 사업비	26,040	26,040	0	0.0
04 잡 수 입	40	90	50	125.0	04 잡지출	224	229	5	2.2
					05 예비비및기타	27,079	27,124	45	0.2

2024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24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 예산액 1,208,357천원

세출 예산액 1,208,357천원

세입. 세출 차인잔액 없음



목천군장애인복지관

[[예산총칙]]

제 1조 2024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208,357천원으로 한다.
(단위 : 천원)

세입	계	1,208,357	세출	계	1,208,357
	사업수입	1,086,424		사무비	1,093,264
	이월금	121,833		재산조성비	32,000
	잡수입	100		사업비	83,000
				잡지출	93

제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조 복지관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상 예산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1) 관간 전용 또는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 2) 목간의 전용은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 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보조금, 지정후원금, 찬조보조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5조 예비비의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시하여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의 받아야 한다.

제 6조 복지관의 예산의 의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2024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1차예산 (A)	2차예산 (B)	증 감(B-A)		관 항 목	1차예산 (A)	2차예산 (B)	증 감(B-A)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050,357	1,208,357	158,000	15.0	합 계	1,050,357	1,208,357	158,000	15.0
01 사업수입	928,424	1,086,424	158,000	17.0	01 사무비	936,524	1,093,264	156,740	16.7
02 이 월 금	121,833	121,833	0	0.0	02 재산조성비	30,700	32,000	1,300	4.2
03 잡 수 입	100	100	0	0.0	03 사업비	83,000	83,000	0	0.0
					04 잡지출	133	93	△40	△30.1